

의안번호	2220443
의 퇴 인	김용태의원
회 답 일	2026. 8. 12.
추계번호	26B3958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안 제20조(가설건축물)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.(제2항) <u><신 설> 3의2. 가설건축물의 이용형태 및 존치 기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,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</u>	의무규정
2	제52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(<u>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</u>)의 벽, 반자, 지붕(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 등 내부의 마감재료[제52조의 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(心材)를 포함한다]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,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20조(가설건축물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제52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	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도시·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용형태 및 존치 기간 등에 따라 소화설비,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·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내·외부 마감재료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¹⁾은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특별자치시장등”)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, 특별자치시장등은 해당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,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
 - 또한, 현행법²⁾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·외부 마감재료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,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수 및 규모, 구체적인 소방시설 및 내·외

1) 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

2. 4층 이상인 경우

3. 구조, 존치기간,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
2) 제52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, 반자, 지붕(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 등 내부의 마감재료[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(心材)를 포함한다]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,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(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)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마감재료의 내용 및 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향후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수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 등의 자료가 부재하고, 개정안은 가설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내·외부 마감재료의 종류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,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